



성과급 지급규칙

규정번호	3-2-12		
제정일자	2007. 10. 01		
개정일자	2012. 04. 30		
개정번호	Ver .6	총페이지	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 소속 교원 및 직원 · 조교의 업무성과를 장려하기 위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성과급 지급예산) 성과급 지급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편성예산의 범위 내로 한다.

제3조 (성과급 지급 기준액) 성과급 지급 기준액은 제2조의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 (성과급 지급 시기) 성과급 지급 시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성과급 지급 대상) 성과급 지급 대상은 전임교원 및 직원 · 조교로 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자와 해외연수로 인하여 평가 당해연도 전 학기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자 및 강의교원은 제외한다.<개정 2008. 1. 15> <개정 2012. 1. 16>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9. 19>

제6조 (성과급 지급등급 및 지급액) 성과급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별표1]과 같다.

제7조 (성과 평가) ① 제6조의 성과급 지급 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원, 조교, 직원별로 각각 [별표2]의 기준에 의거 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 1항의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결과가 없는 경우 및 아래 각호 해당자는 총장이 별도로 평가한다.

1. 기획처 전문위원
2. 산업기술연구소 소장
3. 종합정보지원실 실장
4. 각 행정처장 및 부처장<신설 2012. 1. 16>

③ [별표2]의 1차 평정자는 [별표 3]내지 [별표 3-2]를, 팀장은 [별표4]의 자료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며 총장은 평가결과 확인 및 최종평가 후 [별표5]의 성과평가 등급표를 작성한다.

④ 제1항 [별표2]의 1차 평정자 및 제2항 대상자는 총장이, 총장은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가 [별표3-3]에 의거 평가한다. 다만 1차 평정자 중 부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다.

제8조 (성과평가 대상기간) 성과평가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업적평가는 성과급 지급학년도의 직전학년도 실적으로 한다.
2. 강의평가 등 기타 사항은 성과급 지급학년도 실적으로 한다.

제9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성과급 지급 등급 및 지급액

(제6조와 관련)

지 급 등 급		지급액
등급	지 급 인 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3조에서 정한 기준액의 180% 이상 해당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 초과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3조에서 정한 기준액의 120% 이상 해당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 초과 9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3조에서 정한 기준액의 100% 이하 해당금액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 총장은 각 등급별로 10%의 범위내에서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음

[별표2]

성과 평가기준

평가 대상	평정자	평가 기준	만점	
교수	1차 학부(과)장 평가	- 교수업적평가 50% : (1 - 개별 교수업적 평가 점수 백분율) x 35점	35	
		- 강의평가 점수 20% : (평가 학년도 평균 강의평가 점수/5) x 14점	14	
		- 개별 정성평가 30%	21	
	2차	총장평가	- 학부(과) 취업률 - 학생만족도(학생 유지율 : 재학생수/편제정원) - 개별 정성평가	30
조교	1차	학부(과)장 평가	- 재임용 평가결과 70% - 개별 정성평가 30%	70
	2차	총장평가	- 학부(과) 취업률 - 학생만족도(학생 유지율 : 재학생수/편제정원) - 개별 정성평가	30
직원	1차	부서장 평가	- 근무평정 결과 70% - 개별 정성평가 30%	70
	2차	총장평가	- 팀별 사업성과 평가 (팀별 사업성과 보고서 총장 평가) - 개별 정성평가	30
개별 정성평가		-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발전 기여도 및 학사 참여도 • 근태사항 • 리더쉽 및 친화력 • 직무능력 계발 노력 등 		

※ 평가대상기간 중 인사이동을 한 직원의 팀별 사업성과 평가는 근무기간 비율 감안

[별표3]

교수 성과평가표

소 속 :

번호	직 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업적평가 환산점	강의평가 환산점	정성 평가 평정점	계	

※ 평가 점수는 7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기재함.

200 . . .

위 작성자
직위 : 학부(과)장 성명 : (인)

[별표3-1]

조교 성과평가표

소 속 :

번호	직 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재임용 평가 환산점	정성평가 평정점	계	

※ 평가 점수는 7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기재함.

200 . . .

위 작성자
 직위 : 학부(과)장 성명 : (인)

[별표3-2]

직원 성과평가표

소 속 :

번호	직 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근무평정 환산점	정성평가 평정점	계	

※ 평가 점수는 7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기재함.

200

위 작성자
 직위 : 처(부서)장 성명 : (인)

[별표3-3]

성과 평정자 성과평가표

(제7조 제2항 대상자 포함)

번호	직 위	성 명	평 가 점 수	비 고

- ※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기재함.
- ※ 평가는 교 · 직원 평가기준과 개별정성평가기준을 참작하여 작성함.

200

위 작성자

직위 : 총장 성명 : (인)

[별표4]

각 팀별 사업 평가 자료

1. 팀 작성 사항

사업항목	사업목표	사업 추진내용	사업성과	비고

※ 사업항목은 대표적인 주요사업만 기재하며 일상적인 업무진행 사항은 제외함.

※ 기재란 부족 시 별지 작성

200

위 작성자

팀명 :

팀장 :

(인)

2. 총장 평점 사항

사업항목	사업목표	사업 추진내용	사업성과	종합평가

※ 평가항목은 각각 A, B, C, D, E로 평가하여 기재함.

위 평정자

총 장 :

(인)

[별표5]

성과평가등급표

소 속	직 위	성 명	평 가 점 수			평가 등급	비고
			1차 평점	2차 평점	계		

※ 평가등급은 직종별로 확정한다.

200 . . .

총 장 : (인)